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소개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김진형 사무관



# 목 차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개요 .....	1
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	5
3.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제도 .....	10
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관련 10問 10答 .....	14

##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개요

### ☐ 어린이활동공간 정의 [p.3~5]

- [어린이놀이시설] 장소적 요건과 기구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장소적 요건) 도시공원, 도로 휴게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학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
  - (기구적 요건) 산업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철봉, 모래놀이기구, 볼풀장 등
- [어린이집] 보육실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등)
- [유치원] 교실 (일반 교실, 돌봄 교실 등)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 (일반교실, 돌봄 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음악실 등) 및 도서관
- [키즈카페]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붕붕뽀뽀 및 미니에어바운스) 설치 키즈카페, 장난감 키즈카페

---

## 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근거 법령 [p.10~12]

---

- 어린이활동공간지정(「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시행령 제1조의2)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환경보건법」 제20조제2항)
-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내지 제9항)
-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환경보건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호)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22호, ' 21.11.8.)

**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p.13~14]**

구분		항목별 상세 환경안전관리기준
시설물		① 녹이 슬거나 ② 금이 가거나 ③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도료, 마감재	실내·외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납: 질량분율로 90mg/kg 이하
	실내	①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 : 총합량이 0.1% 이하 ② 신축 등 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준수 - 폼알데하이드 0.002mg/m <sup>3</sup> ·h 이하, 톨루엔 0.08mg/m <sup>3</sup> ·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mg/m <sup>3</sup> ·h(페인트) 또는 40mg/m <sup>3</sup> ·h(벽지) 이하
목재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및 ②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를 사용한 목재 사용 금지(단, 위 기준을 충족하는 도료로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
모래 등 토양		① 납: 200mg/kg 이하, ② 카드뮴: 4mg/kg 이하, ③ 6가 크롬: 5mg/kg 이하, ④ 수은: 4mg/kg 이하, ⑤ 비소: 25mg/kg 이하, ⑥ 기생충란 미검출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① 재료에 들어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mg/kg 이하 ③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의 총합량 : 0.1% 이하
실내공기질		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 : 80μg/m <sup>3</sup> 이하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 400μg/m <sup>3</sup> 이하

## ㉔ 지자체 및 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 담당자 업무내용 [p.16]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 여부 확인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시설 개선 명령(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시)

## ㉕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 기관 역할 및 현황 [p.84]

- [역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시험·검사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및 지자체 등 감독기관 지도·점검 시 기본 및 정밀검사 실시
- [현황] ▲국립환경과학원(당연 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당연 기관), ▲비영리법인\*

\* 어린이활동공간 비영리 시험검사 기관 현황

번호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제1호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조영태	02-2102-2608
제2호	(재)FITI시험연구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김화영	043-711-8868
제3호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15번길 74	제대식	031-428-3817
제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유제철	02-2284-1656
제7호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박종선	02-860-7150
제9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김정근	02-2637-1234

## 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개요 [p.18~20]

- [확인검사 제도 도입] 2014년 3월
- [확인검사 대상 시설] 「환경보건법」 상 모든 어린이활동공간
- [확인검사 시기]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33 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70 제곱미터 수선한 때
- [확인검사 신청자]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
- [확인검사 실시 기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
- [확인검사 결과 접수 및 합격 여부 판단 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 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p.21~23]

순서	구분	업무 내용
①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수선 완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여기서 신축이란 토목, 건축, 전기 공사와 같은 물리적 공사가 완료된 완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는 준공 이후 30일이 아님.
②	확인검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맞춰 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험·검사 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 (시험·검사기관)	-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은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 기관이 아님.
④	현장 방문 및 확인검사 실시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은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검사 (간이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⑤	채취 시료 분석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환경안전관리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을 준수했는지 또는 초과했는지를 시험·검사기관내 시험실에서 분석(정밀검사)함.
⑥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통보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결과)를 작성한 후 이를 확인검사 신청인(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과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송부함.

순서	구분	업무 내용
⑦	확인검사 결과 분석 및 종결 (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	- 시험·검사기관이 제출한 확인검사 결과를 분석한 후,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한 경우라면 확인검사를 종결처리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시설개선을 명령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㉞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부적합 시 조치 절차 [p.23]

순서	구분	업무 내용
①	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	- 「환경보건법」제23조제8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은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은 동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확인 검사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적합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 확인검사 업무 담당 부서와 어린이활동공간 인허가 담당 부서가 다른 경우, 확인검사 업무 담당 부서는 부적합 확인검사 결과를 시설물 인허가 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시설이 사용승인 (준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②	개선 명령 이행 및 이행보고서 제출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시설 개선 명령을 이행하고 감독 기관에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참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이행보고서 제출 시 개선된 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검사 기관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시험·검사 결과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순서	구분	업무 내용
③	개선 명령 이행결과 접수 및 종결 (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	-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이 시설 개선을 명령한 곳이 실제 개선되었는지,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준수했는지 등을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한 후 확인검사 종결처리 여부를 결정함. 시설이 개선이 이루어지 않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다면 ①번 절차부터 시작함.

## 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미이행시 조치 절차 [p.24]

순서	구분	업무 내용
①	확인검사 미이행 확인 (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진행 중에 해당 공간이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의 자발적 확인검사 미이행 신고를 통해 확인함.
②	확인검사 이행명령 (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	-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 확인검사 받도록 명령하여야 함. 명령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참조 - 확인검사 명령 시 20일 범위에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2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확인검사 이행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은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신청함. - 시험·검사기관은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함.

순서	구분	업무 내용
④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소유자 또는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등은 그 명령을 이행한 후 확인검사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 참조</li> </ul>
⑤	확인검사 이행명령의 이행상태 확인 및 종결 (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은 확인검사명령 이행기간이 끝나거나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부터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확인검사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함.</li> <li>- 감독기관의 확인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처벌</li> <li>- 확인검사명령을 이행했으나, 이행상태가 부적정한 경우, '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부적합 시 조치 절차'에 따라 처리</li> </ul>

####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외 시설 [p.26]

- ☐ [환경표지 인증 자재 사용]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수선한 시설, 신축시설은 환경표지 인증 자재 사용과 상관없이 확인검사 대상임

### 3.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제도

####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제도 개요 [p.30~32]

- [지도·점검 제도 도입] 2009년 3월
- [지도·점검 대상 시설] 「환경보건법」 상 모든 어린이활동공간
- [지도·점검 주기] 없음
- [지도·점검 기관] 기초 지자체 및 교육청 (이하 ‘감독기관’)
- [시료 채취 및 분석 지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 ☐ 지도·점검 제외 시설 [p.34]

- [환경표지 인증 자재 사용]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수선한 시설
- [증·수선 없는 시설] 신축 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체의 증·수선 행위가 없는 시설. 다만, 증·수선 행위가 없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환경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지도·점검 대상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준수] 최근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유지기준 및 최근 2년 이내에 권고 기준을 준수한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시설(키즈카페 등)

**대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절차[p.35]**

순서	구분	업무 내용
①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선정 (감독기관)	- 수년간 지도·지도점검 이력이 없었거나, 과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이력 등이 있는 어린이활동공간들로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어린이 건강피해 우려가 높은 곳 선정
②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실시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시</li> <li>- 감독기관 담당자(공무원)만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료를 채취하고 봉투에 밀봉 한 후 시험·검사기관에 이를 의뢰하여야 함.</li> </ul> </li> <li>- 관리·감독기관 담당자(공무원)가 시험·검사기관과 동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검사기관 담당자가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밀봉한 후 시험·검사기관으로 가져감.</li> </ul> </li> </ul>
③	채취 시료 분석 (시험·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우선 간이검사 실시, 간이검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벽지 등은 정밀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정밀검사(시료채취) 바로 시행</li> <li>- 시험·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환경안전관리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을 준수했는지 또는 준수하지 않았는지를 실내 시험실에서 분석(정밀검사)함.</li> </ul>
④	지도·점검 결과 송부	- 시험·검사기관이 채취한 시료의 분석(정밀검사)이 완료되면 시험·검사기관은 지도·점검

순서	구분	업무 내용
	(시험·검사기관)	결과를 감독기관에 송부함.
⑤	지도·점검 결과 분석 및 종결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검사기관이 제출한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라면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종결</li> <li>- 기준을 초과했으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시설개선을 명령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함.</li> </ul>

###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불합격 시 후속 절차 [p.36]

순서	구분	업무 내용
①	시설 개선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사전 통지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에게 문제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li> <li>- 아울러,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li> </ul>
②	피검사자 의견 접수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며, 타당한 경우는 처분 취소* 처리하며,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 시설 개선 명령 등 후속 조치함.</li> <li>* 처분 취소 결정 前 해당 시설을 검사한 기관과 시험·검사 결과 및 현장 방문 당시의 현장 상황 등을 논의하는 등 피검사자의 의견이 타당한 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li> </ul>

순서	구분	업무 내용
③	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되,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li> <li>- 시설 개선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에게 통보함.</li> </ul>
④	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이행 (소유자 또는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의 이행 명령 준수</li> <li>-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초과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개선 조치 후 시험·검사기관에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결과로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이행을 증명하여야 함.</li> </ul>
⑤	개선 명령 이행여부 확인 및 종결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으로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후 개선 명령 이행여부를 실제 확인(현장 방문, 검사기관 검사결과 보고서 검토 등)하여야 함</li> <li>- 개선 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종결처리</li> <li>-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①번 절차부터 다시 시작함</li> </ul>

#### 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관련 10問 10答

1. 어린이활동공간 중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는 시설 범위가 매우 넓은데, 어떤 시설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 어린이놀이기구는 장소적 요건과 기구적 요건을 둘 다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 즉 도시공원, 아동복지시설, 주택단지 놀이터 공공도서관, 하천시설, 박물관 등 행안부에서 규정한 20개의 장소에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볼풀장 등 산업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2.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 교실만이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되던데, 이 교실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 교실이란 어린이가 정규 수업을 받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보통교실과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교실이 해당될 것입니다.
- 특별교실의 경우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컴퓨터실, 영어학습실, 시청각실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담실, 보건실, 급식실, 행정실 등과 같은 수업이 목적이 아닌 공간은 교실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 주체는 누구이며, 이러한 확인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 주체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6개 시험·검사기관 중 한곳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 즉,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 교장 등이 되겠으며, 지자체 또는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확인검사 신청 주체가 아닙니다.

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조건이 어느 한계까지만 안전할 때 그 한계가 되는 값을 말하며, 중금속 안전기준,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토양 안전기준, 방부재 안전기준 등이 있습니다.
- 감독기관은 관할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시 소유자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 결과증명서가 접수될 때도 해당 시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민간 → 국공립)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도·점검 시기에 해당 시설을 포함시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6. 기본검사는 무엇이고 정밀검사는 무엇인가요?

- 기본검사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XRF)를 활용하는 검사를 말하며, 정밀검사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시험실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료(페인트)나 창호는 보통 기본검사 후 정밀검사로 진행되나, 토양이나 실내공기질은 바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정밀검사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 주기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제23조제4항에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그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실제 지키고 있는지를 수시 또는 일정 기간 마다 동법 제29조에 따라 지도·점검 행위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환경부에서 개발중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감독공무원은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그간의 지도·점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초등학교 신축 현장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부분 완공된 현장입니다. 부분 완공된 시설에 한하여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다만, 부분 완공된 현장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완공되지 않은 현장이 위치해 있어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가 된다면 시기를 달리하여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만 확인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9. 어린이놀이기구에 칠해진 도료가 벗겨지거나, 금이 간 경우도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놀이기구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어린이놀이기구 훼손 및 어린이놀이기구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조사는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바닥재의 경우는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10. 기본검사 결과(부적합)만으로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나요?

- 육안(맨눈)으로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곳은 기본검사 결과만으로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호부터 제6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재에서 녹이 발생했거나, 도료의 벗겨짐, 시설물 크랙(금) 같은 경우는 기본(육안)검사만으로 시설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